

시 정 질 문 서

【신석철 의원】

1. 오정구 대장동 220-1 개발제한구역해제가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개발법으로 심의의결 (06.12.8일)되고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07년 2월 26일 개발계획 수립시까지 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” 제63조의 규정으로 무질서한 개발을 막았다.

그린벨트로 묶인 법정동인 대장동은 도로가 없어 한강수리조합 땅인 농사를 짓기 위한 농로로 자동차가 시민이 보행하고 있는데

- ① 중2-61호 도로(오정대로-대장동 마을회관 앞)
- ② 오쇠동(대장동 입구)-대장 1,2동 지나 국도39호선과 만나는 도로중 한 개라도 대장동 개발 전 먼저하고 그린벨트, 김포공항 피해로 동네 형성 때부터 재산권 피해를 보호할 용의는 없는가?

2. 오정동 동사무소 앞 덕산초등학교, 성화교회, 덕산중학교가 있어 학생 통학과 민원서류 방문, 오정구청, 원종동과 연결도로로 매우 복잡한 도로이다. 덕산어린이공원(2003년1월9일 도시계획 결정)조성 부천시 고시와 오정우체국에서 덕산고등학교 앞 도로가 결정되어 있으나 이것을 연계하여 다시 부천시에서 재조사하여 일방통행 처리하고, 교통의 흐름과 어린학생 보호에 대체할 수 있는 인도를 넓게 확보하여 등하교시 많은 학생이 도로로 도보하여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고, 오정대공원과 인접한 덕산어린이공원을 ①일방통행도로 ②도서관 ③동사무소, 덕산초, 중학교 주차장으로 활용 방안을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?